

2023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2022, 10,



2023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1 목적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군산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여 해당자를 근거리 고교에 선배정함으로써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2 방침

- 가.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공고 제2022-298호),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 강,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근거 함.
- 나. 전라북도교육청의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준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는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절차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함.
- 다.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의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따라 '2023.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진행 일정은 2023학년도 평준 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학 전형요강에 맞추어 실시함.
- 라.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서의 판정 내용은 해당 대상자의 적부심사, 적격 판정자의 근거리고교 배정까지를 포함함.
- 마.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서 심사하고 판정하는 선배정자의 대상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에 한함(체육특기자, 쌍생아,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별도 기준과 방법에 의함).
- 바. 판정 심사는 2단계로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판정이 가능한 경우는 1단계 심사로 완료하고, 진단서 및 학생의 상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는 2단계의 출석 심사를 통해서 판정 결과를 확정함(출석 심사의 경우, 전문의 심사 필수).
- 사. 군산교육지원청은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의 결과와 명단을 해당 중학교 (학생)와 도교육청에 송부하고, 평준화일반고 원서접수 후 판정 대상자의 원서작성 상의 오류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함으로써 본 시행계획을 완료함.

3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조직

가. 구성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전문의 3인 포함)으로 구성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는 선배정자 적부판정심사 신청기간 2주일 전까지 구성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함.

나. 조직 및 진행

1) 조직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등교육담당 팀장 장학사로 함.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판정을 위해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전문의 3 인을 위원으로 구성함(필수 진료과목은 상황에 따라 조절함).
-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장학사를 포함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고입업무 담당장학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됨.

2) 진행

-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은 Daum 지도에 의한 최 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고등학교는 학교의 건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정 문으로 지정, Naver 지도 등 참고),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에 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 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 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름.
- 판정심사위원회의 진행 절차 및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위원 서명 후 내부 결재(전자문서)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함.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선배정 대상자 판정은 전원 합의로 함.

다.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구성

순	구분	성명	소속	직급(전공)	비고
1	심사위원	000			위원장
2	심사위원	000			부위원장
3	심사위원	000			내부위원
4	심사위원	000			내부위원
5	심사위원	000		내과전문의	외부위원
6	심사위원	000		정신과전문의	외부위원
7	심사위원	000		정형외과전문의	외부위원
*	간사	000			업무담당자

4 절차 및 일정

- 가.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구성: 2022. 10. 18.(화) 이전
- 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4.(금)
- 다.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2. 11. 7.(월) ~ 2021. 11. 16.(수)
- 라.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도교육청): 2022. 11. 21.(월)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1) 군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중학교에서 교부·접수하여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에 일괄 제출함.
- 2) 군산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에서 교부접수함.

나. 제출서류

- 1) 학생(지워자)
 -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확인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22.10.31.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서식14)

- ㅇ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다자녀 대상자)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22.10.31.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서식14)
- ※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군산(가)(나)]에 있어야 함]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 ※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담임선생님 확인용)

《 다자녀 대상자 유의사항 》

- ※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함(※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다자녀도 해당함).
- ※ 재학생 여부는 2023.3.1.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2) 중학교(해당학생 소속 중학교)
- 유형별 학생 신청서(철)와 제반 증빙서류(인편제출)
- 선배정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서식 5〉(엑셀), 〈서식 6〉(엑셀))
 - 〈서식5〉、〈서식6〉 출력본 인편제출 및 공문제출

6 지정 기준 및 심사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 본 시행계획의 '희귀병질환자'라 함은 사전적 의미의 '희귀병'의미 범주에 준하지 않고, 많이 알려진 질병이라도 질환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이 어려워 근거리 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의미를 확대하며,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 1) 지정 기준

군산시(가)(나)에 거주하는 자로서, 2023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 나) 심각한 질환을 가져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예: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다) 거주지와 재학 중학교는 지원자와 지원자 부 또는 모가 지원 지역[군산(가),(나)]에 있어야 하며, 거주지 및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은 2022. 10. 31. 임.
 - (단, 희귀병질환자의 진단서는 2022. 10. 1. 이후 발급된 것으로 한함)
 - **※** 주민등록등본은 2022.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2) 심사 ·지정 방법

- 가) 학교로부터 접수한 유형별 선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는 접수번호(총 6자리) 를 재부여하고<서식 7> 심사 일정에 맞춰 판정 심사를 진행함.
- 나)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심사 실시
- 다) 서류심사: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에 의한 서류심사
- 라) 출석심사
 - 대상: 서류심사 결과 출석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 방법: 보건교사 또는 보호자 인솔 하에 군산교육지원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판정
 - 일시 및 장소: 별도 공문으로 추후 안내
 - ※ 출석심사대상지는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또는 본인에게 별도 통보함(공문, 〈서식8〉),
 - 해당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 병행

3) 판정 결과 작성

신청자의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로서 근거리 배정 대상자를 판정하고 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를 배정하여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에 '판정결과(적/부)'와 '배정교(학교명)'를 작성함〈서식 7〉.

4) 기타

- 가) 단위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내하고 확인하기 바람.
- ☞ 특수교육대상자는 고입전형을 위한 학교지원 및 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는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정원내 배정에 속하나 근거리 고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는 학생임.
- 나) 출석심사 대상자는 지정일(시간), 지정 장소에 출석하여 심사에 응해야 하며, 불참 시는 포기로 간주하고 지정심사에서 제외함.
- 다) 출석심사 대상자는 출석 시 반드시 보건교사나 보호자가 인솔함.

나. 다자녀대상자

- 1) 지정 기준
 - 가) 주민등록등본상의 다자녀(영유아 포함 3자녀 이상)가 모두 2023. 3. 1. 기준으로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나)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한 군산 (가)(나)지역이어야 함.
 - 다) 제출된 주민등록등본(2022. 11. 1.부터 발급)으로 대상자를 확인함.

2) 심사·지정 방법

- 가) 학교로부터 접수한 유형별 선배정자 명단을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 번호(총 6자리)를 재부여하고</hd>
 심사 일정에 맞춰 판정 심사를 진행함.
- 나) 판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함.
- 다) 서류심사 필요시 다음의 경우를 확인함.
 - 서류상 자격조건을 확인하되 지원자의 부모에 대하여 다자녀(3자녀 이상)이며,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등하교함(2023. 3. 1.기준).
 - <u>거주지 및 모든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은 2022. 10. 31.</u>
- 3) 판정 결과 작성
 - 가) 다자녀대상자로 판정되면 해당 학생을 근거리 학교의 배정교를 확정하고,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에 판정결과(적/부)와 배정교(학교명)를 작성함</

7 | 적격대상자 근거리고교 배정 방법

-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와 '다자녀 대상자'로 적격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근거리 고교 배정은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확보함.
- 나. 거주지 기준 근거리고교의 거리 측정은 Daum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고등학교는 학교의 건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정문으로 지정, Naver 지도 등 참고),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상이할 경우에는 선배정자 판정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다. 최단 근거리 학교와 그 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전원 합의로 함.

8 졸업생 선배정 대상자 확인서 재발급 및 재심사

- 가. 대상: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나. 재발급: 2023학년도 고입전형 이전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학생으로 판정된 자의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는 <u>재심사를 받지 않고</u> 붙임〈서식 13〉에 의거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판정 시행 기간 중에 재발급 신청서와 진단서(2022. 10. 1. 이후 발급)를 해당 군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함.
- 다. 재심사 : 2023학년도 고입전형 이전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로 판정된 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근거리 학교를 다시 선배정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출신중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정을 받아야 함.

9 행정사항

- 가.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제출 안내
 - 1) 접수기간: 2022. 11. 1.(화) ~ 11. 4.(금)
 - 2) 제출방법: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및 인편제출
 - K-에듀파인 업무관리 : 겉공문 1부 및 엑셀 파일<서식5,6> 첨부
 - 인편제출: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날인 및 직인 필수)
 - 3) 제 출 처: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 4) 문 의 처: 군산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 이원(450-2640)
-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학력인정자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 접수 및 접수대장 작성 등은 중학교용 작성 서식에 준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진행함.

다.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각 1부. 4.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5. 학교장 확인서 1부. 〈서식 3〉 6. 〈서식 5〉: 중학교별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서식 13〉 - 해당자에 한함(6쪽 참고)	진단서는 공 무원채용신체 검사규정 제3 조 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2022. 10. 1. 이후 발급)일 것.
다자녀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 〈서식 2〉 3.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1부. 〈서식 4〉 4. 재학증명서 각 1부.(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 중3 학생 본인의 재학증명서는 제출 생략 5. 〈서식 6〉: 중학교별 6. 〈서식 14〉: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은 2022. 11. 1.부터 발급 받은 것에 한 함. 검정고시 합 격생은 합격 증 원본(성적 기재) 또는 확인서 지참.

※ 참고: <서식 7> ~ <서식 12>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함

10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선배정자 판정 신청 요건에 해당되어 신청한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은 판정 내용 (배정교 포함)을 수용해야 함(※심사숙고하여 신청할 것).
- 나.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안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통신문 발송은 물론 적극적인 안내를 하시고, 학교 배정 후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가정통신문 발송, 문자 서비스 실시, 학교홈 페이지 탑재 및 안내 등).
- 다. 판정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위해 학교 진학부장 및 3학년 담임교사는 업무내용과 일정을 숙지하시기 바람.
- 라. 근거리 판정을 위한 주소지는 2022. 10. 31.(월)을 기준으로 하고, 2022. 11. 1.(화) 이후 주소지를 옮긴 자는 근거리 학교 선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마. 모든 자료 송부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u>'비공개' 처리</u>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유념함.
- 바. 각 중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 「2023.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선배정 업무 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람.
- 사.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고,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 신청 후 취소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배정 대 상자 심사 신청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아. 학부모로부터 선배정 판정 시행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각종 <서식1 ~ 14>

서식	내용	비고
서식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학교작성용
서식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다자녀 대상자)	학교작성용
서식 3	학교장 확인서	학교작성용
서식 4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학교작성용
서식 5	선배정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학교작성용
서식 6	선배정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다자녀 대상자)	학교작성용
서식 7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교육지원청작성용
서식 8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판정 2차 출석 심사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교육지원청 → 중학교 발 송용
서식 9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다자녀대상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교육지원청작성용
서식 10	선배정자 판정 결과 및 선배정 학교 확인서	교육지원청작성용
서식 11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결과표(중학교 발송용)(엑셀서식)	교육지원청 → 중학교 발 송용
서식 12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결과표(엑셀서식)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제출용
서식 13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학교작성용
서식 14	담임의견서 및 확인서	학교작성용

<서식 1> 학교작성용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신	성명			생년월일	00	.00.00
· · · 청 · · 자	학교명	중학교	학번	3 01 12 * 5자리 숫자로 기입 (<mark>학년</mark> /반/번호)	성별	
^f	주소					
	강상태					
(신난서	상의 질환명)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군산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심사 및 근거리 고등학교 선배정을 받고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덧붙여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신청학생 (서명/인)

보호자 (서명/인)

위 학생은 본교(졸업예정자 · 졸업자)임을 확인함

2022년 11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자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학교작성용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다자녀 대상자)

신	성				생년	년월일		00	.00.00
청	학교명		중학교	학번		<mark>3</mark> 01 12 기숙자로 기업 선/반/번호)]	성별	
자	주소								
	유아 및 북도 소재			u	テコ	자택			
초·중 자	··고 재학 ·녀 수 3. 1.기준)	()명		호자 락처	휴대전화			

2022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지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심사 및 근거리 고등학교 선배정을 받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선배정자판정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신청학생 (서명/인)

보호자 (서명/인)

위 학생은 본교(졸업예정자 · 졸업자)임을 확인함

2022년 11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자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3> 학교작성용

학교장 확인서

-1)	성	명			생년	월일	0	0.00.00	
대 상	학	교 명	중학교	학번	<mark>3</mark> 01 12 * 5자리 숫자로 기입 (<mark>학년</mark> /반/번호)		성별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임교사	의	견	예기) 위 학생은 2022. 9. 신체가 매우 북편하 도보로 통학이 가능 근거니 통학대상자로 예2) 위 학생은 중학교 역 입원, 약물복용 등의 장애인 등측은 받지 상태를 충분히 확인 따나서, 신각한 진행 에 근거니 통학 대신	역 교통 한 근기 입학 후 기 보 수 기 한 은 기	· 수단응 선거에 있 정응 요찬 경력이 있 정으나, 있음 저 확교	이용하기 힘등 (는 학교에 통 성함 건강상태가 있고, 현재도 7 병원 진단서 통학에 극히	등려, -학하기- 악합되여 대속하여 등으로	를 원하기에, 너 현재 병원 '치류중입 학생의 건강	

2022년 11월 일

○ ○ 중 학 교 장 [직 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자판정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4> 학교작성용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성명				 생	 ¹ 월일		00.0	0.00			
신 청	학교명		중학교	학번			입	성별				
자	주소					, , ,		<u> </u>				
전리	등유아 및 가북도 소재 중·고 재학	()명		호자	자택						
	자녀 수 . 3. 1.기준)	`	,	1	[락처	휴대전화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 자녀 현황(2022. 10. 31.기준)												
순	성명	재학 지역	재학 학교명	재힉 학년		생년월일		. 3. 1.기준 학학교급	비고			
1	정예시	전주	행복중	3		07.04.06.		7	본인			
2	정진학	전주	행복초	6		10.07.05.		3				
3	정진로	전주				20.06.08.			영유아			
4												
5												
		작성:	자 학 생			(서명	/인)					
		, 0	보호자	_		(서명						
							, c,					
			위 기	록사힝	을 확	·인함						
		확인	자 담임			(서명	/인)					
			2022년	11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서배정	자판정선	시사으	위회	의 위의자	귀	하				
		ا اا ت		<u> </u>	1 1 -	1120	' '	- J				

<서식 5> 학교작성용(엑셀서식) ※출력본(날인 포함) 인편제출, 파일(스캔본 아님, 날인 생략) 공문제출

선배정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중학교 [직인]

○○ 중학교 교감 (인)

접수 번호 (순)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 <mark>자리</mark>)	성별	진단서 상 질병명	신청자 주소	주소지 전입일 (년,월,일)	졸업 여부 (졸업/예정)	담임 확인 (인)
101	예시중	정예시	30501	남	심장질환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75 전주아파트 105동 1101호	2019.1.8.	예정	
102									
103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접수번호는 <101, 102, 103, ...>의 학교별 연번으로 작성함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접수번호는 '1'로 시작하며 실제 번호는 2자리로 구성되어 총 3자리 번호로 기재함('다자녀대상자'의 접수번호는 '2'로 시작하여 4자리임)
- ※ 반드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증명서(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 2022. 11. 1.(화) 이후에 옮긴 주소지는 근거리학교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 ※ 근거리학교 선배정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2022. 11. 1.(화))부터 발급)을 첨부하여야 함
- * '선배정자 판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로 판정된 자 중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유형]의 '지체부자유자'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지원자'를 선택한 후 지망 학교를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지체부자유 학생 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지원자 학생의 배정방식에 따름에 유의함
-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판정심사 및 배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결의 및 판정에 따름

<서식 6> 학교작성용(엑셀서식) ※출력본(날인 포함) 인편제출, 파일(스캔본 아님, 날인 생략) 공문제출

선배정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

(다자녀대상자)

○○ 중학교 [직인]

○○ 중학교 교감 (인)

접수 번호 (순)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자리)	성별	다녀수 (본)학	신청자 주소	주소지 전입일 (년,월,일)	졸업 여부 (졸업/예정)	담임 확인 (인)
2001	예시중	정에시	31019	남	3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75 전주아파트 105동 1101호	2015.1.8.	예정	
2002									
2003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 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접수번호는 <2001, 2002, 2003, ...>의 학교별 연번으로 작성함
- '다자녀대상자'의 접수번호는 '2'로 시작하며 실제 번호는 3자리로 구성되어 총 4자리 번호로 기재함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의 접수번호는 '1'로 시작하여 3자리임)
- ※ 반드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 2022. 11. 1.(화) 이후에 옮긴 주소지는 근거리학교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 ※ 근거리학교 선배정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2022. 11. 1.(화))부터 발급)을 첨부하여야 함
- ※ '선배정자 판정 심사위원회'에서 다자녀로 판정된 자 중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유형]의 '다자녀대 상자'를 선택하지 않고 '일반지원자'를 선택한 후 지망 학교를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는 다 자녀대상자 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지원자 학생의 배정방식에 따름에 유의함
- ※ 선배정자 판정심사 및 배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결의 및 판정에 따름

<서식 7> 교육지원청작성용(엑셀서식)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접 수 번 호	학교별 접수번호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자리)	성 별	진단서 상 질병명	신청자 주소	주소지 전입일 (년,월,일)	판정 결과	배정교 (확정)
810001	101	예시중	정예시	30501	남	심장질환	전주시 덕진구 우 아로 75 전주아파 트 105동 1101호	2019.1.8.	적	행복고
810002	101									
	•••									

- ※ [접수번호]는 각 학교에서 접수한 명단을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번호를 지원청별 일련번호로 재부여함(교육지원청 접수번호는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7로 시작하는 6자리이며, 710001 부터 시작함 교육청 고유번호 '7',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번호 '1', 그리고 네 자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한 연번임)
- ※ 교육지원청 고유번호는 전주교육지원청 '7', 군산교육지원청 '8', 익산교육지원청 '9'번임
- ※ [주소]는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입함(근거리 배정을 위함)
- ※ [학교별 접수번호]는 해당학생의 학교에서의 일괄 접수번호를 기재함(총 3자리)
- ※ [판정결과]와 [배정교(확정)]은 판정심사가 끝난 후 판정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함

<서식 8> 교육지원청→학교발송용(엑셀서식)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판정 2차 출석심사 대상자 명단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접수 번호	학교별 접수번호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자리)	성별	진단서 상 질병명	신청자 주소	주소지 전입일 (^월 ,일)
810003	105	행복중	이행복	30722	남	지체장애5급	완산구 효자동 봉곡 로 000, 효자0차아파 트 000동 0000호	2019.03.29
810010								
810017								

^{※ &}lt;2차 출석심사 대상자 명단>은 <서식6>의 명단 중에서 출석심사 대상자만 추출하여 따로 작성하며, [순]의 일련번호를 부여함

- ※ [접수번호]는 <서식6>의 해당학생 [접수번호]를 다시 기재함(일련번호가 아님)
- ※ [주소]는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명과 동호수를 기입함(근거리 배정을 위함)
- ※ [학교별 접수번호]는 해당학생의 학교에서의 일괄 접수번호를 그대로 기재함(총 3자리)

<서식 9> 교육지원청작성용(엑셀서식)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다자녀대상자' 판정 심사 대상자 명단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접 수 번 호	학교별 접수번호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자리)	성별	다녀수 (본(편)	신청자 주소	주소지 전입일 (년,월,일)	판정 결과	배정교 (확정)
820001	2001	예시중	정예시	31019	남	3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75 전주아파트 105동 1101호	2015.1.8.	예정	
820002	2002									
820003	2003									
•••										

- ※ [접수번호]는 각 학교에서 접수한 명단을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번호를 지원청별 일련번호로 재부여함(교육지원청 접수번호는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7로 시작하는 6자리이며, 720001부터 시작함 교육지원청 고유번호 '7', 다자녀 대상자 번호 '2', 그리고 네 자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한 연번임)
 - ※ 교육청 고유번호는 전주교육지원청 '7', 군산교육지원청 '8', 익산교육지원청 '9'번임
- ※ [다자녀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한 가구의 자녀수를 작성함(서류 확인 가능 인원)
- ※ [학교별 접수번호]는 학교에서 일괄 접수해 온 해당 학생의 학교별 접수번호를 적음
- ※ [판정결과]와 [배정교(확정)]은 판정심사가 끝난 후 판정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함

<서식 10> 교육지원청작성용

선배정자 판정 결과 및 선배정 학교 확인서

접수번호		(교육지원청 부여 접수번호)								
성명		성별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중호	하고 졸	업					
주소										
판정대상 자유형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다자녀대상자 판정결과 적격									
선배정학교명										
위 사람은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 환자/다자녀대상자 판정 심사대상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근거리 고등학교에 위와 같이 선배정되었음을 증명함.										
2022년 11월 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교부	자									
	(인)									

<서식 11> 교육지원청→학교 발송용(엑셀서식)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결과표(중학교발송용)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수신: ○○중학교장

□ 선배정자 판정 심사 결과 현황

순	구분	신청자 수	적격 판정자 수	부적격 판정자 수	선배정 학생 수	비고
1	지체부자유자, 희귀병질환자					
2	다자녀 대상자					
	계					

※ <서식 7>, <서식 9> 첨부

※ 해당 중학교별로 발송

<서식 12>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제출용(엑셀서식)

2023학년도 평준화일반고 입학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결과표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1. 선배정자 판정 심사 결과 현황

순	구분	신청자수	적격 판정자 수	부적격 판정자 수	선배정 학생 수	비고
1	지체부자유자,					
1	희귀병질환자					
2	다자녀					
2	대상자					
	계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결과 세부 현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적격 판정자 현황

순	접수번호 (교육지원청)	학교별 접수번호	학교명 (약식명)	성명	학번 (5자리)	성별	진단서 상 질병명	신청자 주소	판정 결과	배정교
1	710001	101								
2	710002	102								
3	710003	103								
4	710004	104								
	•••	•••								
계										

나. 다자녀대상자 적격 판정자 현황

순	접수번호 (교육지원청)	접수번호 (학교별)	학교명	성명	학번 (5자리)	성별	다자녀 수	신청자 주소	판정 결과	배정교
1	820001	2001								
2	820002	2002								
3	820003	2003								
4	820004	2004								
5	820005	2005								
	•••	•••								
계										

<서식 13> 학교작성용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주 소			학.	교명	접수	- 번 호
T 在				중학교	2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성	별
			만	세	남·	여

본인은 ()학년도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선배정 판정 심사 결과 선배정자 적격 판정된 자로서 2023학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위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판정 및 선배정 증명서 를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보호자 (서명/인)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 ○ 중학교장 [직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지체부자유학생판정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4> 학교작성용

담임 의견서 및 확인서

대	성명		생년월일				
상	소속	학교	학년	반	재학 •	졸업	
자	주소						
즈	빙 서류	 지체부자유자 및 희국 보호자와 거주 사실(° 기타 전라북도 고입(평 	뎨, 조손 가정 등)				외

위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 2023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평준화 지역 선배정자 판정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유로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증빙서류를 담임의 견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사유(내용)

1.

2.

3학년 ()반 담임교사: (서명/인)

○○중학교장 (직인)